[준법감시인 심의필 2022-1557(심의일: 2022.12.12)(유효기간: 2023.01.01 ~ 2023.12.31)]

개인형 퇴직연금제도(IRP) 상품 설명서

<table>
<tr><th>항 목</th><th>내 용</th></tr>
<tr><td>IRP제도 개요</td><td>소득이 있는 개인이 노후자금으로 활용하기 위해 세제혜택을 받으며 부담금(개인부담금 또는 퇴직금)을 적립/운용하고 만55세 이후 연금으로 수령할 수 있는 퇴직연금제도</td></tr>
<tr><td>가입대상
및
증빙서류</td><td>
<table>
<tr><th>가입대상</th><th>증빙서류(택1)</th></tr>
<tr><td>퇴직급여 일시금 수령자</td><td>퇴직소득 원천징수 영수증 등</td></tr>
<tr><td>퇴직연금제도 가입자</td><td>퇴직연금제도 가입사실 확인서, 근로계약서, 재직증명서,
원천징수영수증,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</td></tr>
<tr><td>자영업자</td><td>사업자등록증, 사업소득원천징수영수증, 소득금액증명원,
고용보험가입확인서, 산재보험 가입확인서 등</td></tr>
<tr><td>퇴직금제도 적용근로자
퇴직급여제도 미설정 근로자</td><td>근로계약서, 재직증명서, 원천징수영수증,
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</td></tr>
<tr><td>직역연금 가입자
(공무원, 사립학교직원, 군인, 별정우체국직원)</td><td>재직증명서,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</td></tr>
</table>
</td></tr>
<tr><td>납입방법</td><td>자유납입 또는 정액적립 (납입중단에 따른 실효 없음)</td></tr>
<tr><td>납입한도</td><td>개인부담금 : 연간 1,800만원 (연금저축 및 퇴직연금 개인부담금 全금융기관 합산)
퇴 직 금 : 과세이연 된 퇴직소득
※ISA(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)계좌 만기 시 전환금액
※1주택 고령가구*가 가격이 더 낮은 주택으로 이사한 경우 그 차액(1억원 한도) *부부 중 1인 60세 이상</td></tr>
<tr><td>세액공제
(개인부담금)</td><td>▶종합소득 45백만원(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 55백만원) 이하의 경우 당해년도 납입액의 16.5%
▶종합소득 45백만원(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 55백만원) 초과한 경우 당해년도 납입액의 13.2%
※세액공제 대상 납입한도(연금저축 납입한도) : 전 금융기관 합산 900만원(600만원)+ISA 만기 전환 금액의 10%(연 300만원 한도)</td></tr>
<tr><td>연금개시</td><td>▶ 최초불입일 이후 5년 경과 및 만55세 이상인 경우, 연금개시 가능하며 연금지급기간은 최소 10년 이상 연단위로 수령가능
단, 퇴직금을 수령한 계좌는 가입기간 관계없이 만55세 이상이면 연금개시 가능
▶ 지급단위 : 매월 / 3개월 / 6개월 / 년 (연금개시 전 별도신청)</td></tr>
<tr><td>중도해지
및
중도인출</td><td>▶가입자가 원할 경우 중도해지(일시금 지급) 가능
<table>
<tr><th>중도인출 사유
(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시행령 제2조)</th><th>부득이한 사유
(소득세법 시행령 제20조의 2)</th></tr>
<tr><td>• 무주택자 주택구입
• 무주택자 주거목적의 전세금/임차보증금 부담
• 본인 및 부양가족의 6개월 이상 요양으로서 의료비가 연간 임금총액의 1천분의 125를 초과하는 경우
• 5년 이내 가입자 파산 또는 개인회생절차 개시
•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경우
(노동부령이 정하는 사유와 요건을 갖출 것)</td><td>• 가입자의 사망
• 해외이주
• 본인 및 부양가족의 3개월 이상 요양
• 파산 또는 개인회생절차 개시</td></tr>
<tr><td>상기 사유에 해당될 경우 중도인출 가능</td><td>상기 사유에 해당될 경우 연금소득세로 분리과세</td></tr>
</table>
※“부득이한 사유”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 인출금액에 대해 일반과세(퇴직소득세 또는 기타소득세)</td></tr>
</table>

<table>
<tr><th>항 목</th><th>내 용</th></tr>
<tr><td>과 세
(세율)</td><td>
<table>
<tr><th>구 분</th><th>퇴직급여</th><th>개인부담금
(세액공제 받은 금액)</th><th>수 익</th></tr>
<tr><td>연금수령</td><td>연금소득세(퇴직소득세 70%)
단 연금수령시점 10년 초과시 퇴직소득세 60% 적용</td><td colspan="2">저율 · 분리과세
종합과세, 16.5% 분리과세</td></tr>
<tr><td>연금 외 수령</td><td>퇴직소득세</td><td colspan="2">기타소득세(16.5%)</td></tr>
</table>
※ ○ 1,200만원 이하 : 저율·분리과세* 또는 종합과세
* 55~69세 → 5.5% 적용 / 70~79세 → 4.4% 적용 / 80세~ → 3.3% 적용
○ 1,200만원 초과 : 종합과세 또는 16.5% 분리과세
※세액공제 받지 않은 원금 : 과세제외 (필요서류:연금보험료 등 소득·세액공제 확인서)
</td></tr>
<tr><td>수수료</td><td>
<table>
<tr><th>구 분</th><th colspan="2">운용관리 수수료율</th><th colspan="2">자산관리 수수료율</th><th>장기계약할인</th></tr>
<tr><td rowspan="2">고객납입액</td><td>1억원미만</td><td>0.08%</td><td>1억원미만</td><td>0.20%</td><td rowspan="4">2차년도 10%
3차년도 12%
4차년도 15%
5차년도 이후 20%</td></tr>
<tr><td>1억원이상</td><td>0.07%</td><td>1억원이상</td><td>0.17%</td></tr>
<tr><td rowspan="2">퇴 직 금</td><td>1억원미만</td><td>0.30%</td><td>1억원미만</td><td>0.20%</td></tr>
<tr><td>1억원이상</td><td>0.28%</td><td>1억원이상</td><td>0.17%</td></tr>
</table>
▶ 비대면 신규계좌 개설시 운용관리수수료 및 자산관리수수료 미적용
▶ 연금수령개시를 신청한 경우에는 운용관리수수료의 80% 할인율 적용
▶ 수수료 = (대상기간 중 평가금액의 평균) x 수수료율 x (적용일수/365) x (1–할인율)
▶ 계약이전시 퇴직연금사업자와 최초로 계약한 날을 계약 시작일로 간주하여 장기할인 적용
▶ 매년 계약응당일 납입금액에서 차감
※ 단, 수익증권 운용 시 상품에 따라 별도 보수가 발생할 수 있음
</td></tr>
<tr><td>자산운용</td><td>– 가입자 본인의 운용지시에 의한 상품운용(정기예금, 수익증권)
– 수익증권으로 운용 시 원금손실 가능성 있음
– 영업점 방문 또는 인터넷뱅킹, 스마트뱅킹을 통해 수시 운용자산(비율) 변경 가능</td></tr>
<tr><td>편입상품에 따라
원금보장 여부가
달라질 수 있습니다.</td><td>이 퇴직연금은 예금보호 대상 금융상품으로 운용되는 적립금에 한하여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되, 보호 한도는 귀하의 다른 예금보호 대상 금융상품과 별도로 1인당 “최고 5천만원”이며, 5천만원 초과하는 나머지 금액은 보호하지 않습니다.
단 2개 이상의 퇴직연금제도에 가입한 경우 합하여 5천만원까지 보호합니다.</td></tr>
</table>

유의사항

본 상품설명서는 고객의 안내를 돕기 위한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므로 은행과 고객간의 계약관계에 법적 구속력이 없으며, 실제 계약내용은 수령하시는 계약서에 따릅니다.
그 밖에 상세내용은 가입 전 반드시 계약서를 참조하시고,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영업점 방문하시거나,부산은행 고객센터(1588–6200)으로 문의 하시기 바랍니다.

퇴직연금 불건전 영업 신고센터 이용안내

퇴직연금 불건전 영업사례

- 퇴직연금 가입자에 대한 계약체결 강요행위
- 퇴직연금 가입을 조건으로 가입자 또는 사용자에게 직.간접적으로 부당한 부가서비스 등 특별한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
- 기타 퇴직연금 계약체결과 관련한 퇴직연금사업자의 관련 법규 위반행위

이용안내

- 금융감독원 퇴직연금 종합안내 홈페이지(http://pension.fss.or.kr)
- 금융감독원 민원상담전화: 금감원콜센터 1332

수수료 부과

• **개인형IRP 계좌**에는, 대상기간중 적립금 평균잔액을 기준으로 아래의 수수료율을 적용하여 **운용 · 자산관리 수수료가 각각 부과됩니다.**

구 분	대면개설시 연간 수수료율				온라인개설시 연간 수수료율			
	운용관리 수수료율		자산관리 수수료율		운용관리 수수료율		자산관리 수수료율	
고객 납입액	1억원미만	0.08%	1억원미만	0.20%	1억원미만	미적용	1억원미만	미적용
	1억원이상	0.07%	1억원이상	0.17%	1억원이상	미적용	1억원이상	미적용
퇴직금	1억원미만	0.30%	1억원미만	0.20%	1억원미만	미적용	1억원미만	미적용
	1억원이상	0.28%	1억원이상	0.17%	1억원이상	미적용	1억원이상	미적용

* 개인형IRP에는 고객이 자기부담으로 납입할 수도 있고, 퇴직후 퇴직금(퇴직급여)을 납입할 수도 있음
** 기타 수수료 할인조건 및 연금수령단계 수수료율은 운용·자산관리약관(계약서)에서 확인 가능함
※ **금융회사별 수수료 비교**는 **'통합연금포털'**(https://100lifeplan.fss.or.kr)에서 **확인가능함**

• **이와 별개로,** 고객이 적립금을 **펀드로 운용할 경우에는 해당 운용금액에 대해 펀드보수가 별도로 부과**됩니다. 보수율은 해당 펀드의 투자설명서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.

중도해지 세 제

• 고객이 **자기부담으로 납입한 금액**은 연말 세액공제(13.2~16.5%)가 가능하지만, 세액공제를 받은 후 **중도해지할 경우에는 공제액보다 많은 세금*을 납부**할 수 있습니다.

*중도해지시, **세액공제받은 원금과 운용수익**에 대해 **기타소득세〈16.5%〉 과세**

연금수령 조 건

• ① **만 55세 이상**으로 ② **가입일부터 5년 경과시 연금수령**이 **가능***하며, 연간 수령액은 **소득세법**(시행령 40조의2)**에서 정한 한도내에서 수령해야 낮은 세율**의 연금소득세율을 **적용**받을 수 있습니다.

*단, **퇴직금**이 **입금**된 **개인형IRP계좌**는 **만 55세이상 조건만 충족하면 연금수령**이 **가능**

연 간 납입한도 설 정

• 소득세법상(시행령 40조의2) **연간 자기부담금 납입한도를 최대 1,800만원*까지 설정(모든 금융회사의 IRP 및 연금저축계좌를 합산)**할 수 있으므로, **계좌당 납입한도**를 **너무 높게 설정할 경우**에는 **다른 연금계좌 개설이 불가능**할 수 있으므로 **유의**하시기 바랍니다.

***연말 세액공제를 받는 기준금액은 900만원**인 반면, 고객이 **납입할 수 있는 금액은 최대 1,800만원임**(IRP 및 연금저축계좌는 **운용기간중 배당·이자소득세〈15.4%〉 비과세**)

적립금 운 용

• 고객이 적립금에 대해 **운용지시를 하지 않는 경우**에는 **금리가 낮은 대기성 자금**(고유계정대)으로 **운용**됩니다.
• 운용상품 교체·해지·**계약이전**을 위해, **원리금보장상품**을 **만기전에 매도**할 경우에는 만기 약정금리 보다 **낮은 중도해지이율이 적용**됩니다.
• 마찬가지로, **일부 펀드상품**(특히, 만기가 정해진 펀드)**은 편입한 후 단기간내**(예: 2년)**에 환매할 경우에는 환매수수료가 발생**할 수 있습니다. 환매수수료 부과여부 및 환매수수료율은 해당 펀드의 투자설명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
교 부 확 인

• 부산은행 ( )지점(직위 / 성명 :)으로부터 위 내용에 대하여
(핵심설명서를 제공받고 그 주요내용을 설명 들었음.)

년 월 일

성명 : 서명 또는 (인)

[준법감시인 심의필 2022-1556(심의일: 2022.12.12)(유효기간: 2023.01.01 ~ 2023.12.31)]

수수료 부과

• **개인형IRP 계좌**에는, 대상기간중 적립금 평균잔액을 기준으로 아래의 수수료율을 적용하여 **운용 · 자산관리 수수료가 각각 부과됩니다.**

구 분	대면개설시 연간 수수료율				온라인개설시 연간 수수료율			
	운용관리 수수료율		자산관리 수수료율		운용관리 수수료율		자산관리 수수료율	
고객 납입액	1억원미만	0.08%	1억원미만	0.20%	1억원미만	미적용	1억원미만	미적용
	1억원이상	0.07%	1억원이상	0.17%	1억원이상	미적용	1억원이상	미적용
퇴직금	1억원미만	0.30%	1억원미만	0.20%	1억원미만	미적용	1억원미만	미적용
	1억원이상	0.28%	1억원이상	0.17%	1억원이상	미적용	1억원이상	미적용

* 개인형IRP에는 고객이 자기부담으로 납입할 수도 있고, 퇴직후 퇴직금(퇴직급여)을 납입할 수도 있음
** 기타 수수료 할인조건 및 연금수령단계 수수료율은 운용·자산관리약관(계약서)에서 확인 가능함
※ **금융회사별 수수료 비교**는 **'통합연금포털'**(https://100lifeplan.fss.or.kr)에서 **확인가능함**

• **이와 별개로,** 고객이 적립금을 **펀드로 운용할 경우에는 해당 운용금액에 대해 펀드보수가 별도로 부과**됩니다. 보수율은 해당 펀드의 투자설명서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.

중도해지 세 제

• 고객이 **자기부담으로 납입한 금액**은 연말 세액공제(13.2~16.5%)가 가능하지만, 세액공제를 받은 후 **중도해지할 경우에는 공제액보다 많은 세금*을 납부**할 수 있습니다.

*중도해지시, **세액공제받은 원금과 운용수익**에 대해 **기타소득세〈16.5%〉 과세**

연금수령 조 건

• ① **만 55세 이상**으로 ② **가입일부터 5년 경과시 연금수령**이 **가능***하며, 연간 수령액은 **소득세법**(시행령 40조의2)**에서 정한 한도내에서 수령해야 낮은 세율**의 연금소득세율을 **적용**받을 수 있습니다.

*단, **퇴직금**이 **입금**된 **개인형IRP계좌**는 **만 55세이상 조건만 충족하면 연금수령**이 **가능**

연 간 납입한도 설 정

• 소득세법상(시행령 40조의2) **연간 자기부담금 납입한도를 최대 1,800만원*까지 설정(모든 금융회사의 IRP 및 연금저축계좌를 합산)**할 수 있으므로, **계좌당 납입한도**를 **너무 높게 설정할 경우**에는 **다른 연금계좌 개설이 불가능**할 수 있으므로 **유의**하시기 바랍니다.

***연말 세액공제를 받는 기준금액은 900만원**인 반면, 고객이 **납입할 수 있는 금액은 최대 1,800만원임**(IRP 및 연금저축계좌는 **운용기간중 배당·이자소득세〈15.4%〉 비과세**)

적립금 운 용

• 고객이 적립금에 대해 **운용지시를 하지 않는 경우**에는 **금리가 낮은 대기성 자금**(고유계정대)으로 **운용**됩니다.

• 운용상품 교체·해지·**계약이전**을 위해, **원리금보장상품**을 **만기전에 매도**할 경우에는 만기 약정금리 보다 **낮은 중도해지이율이 적용**됩니다.

• 마찬가지로, **일부 펀드상품**(특히, 만기가 정해진 펀드)**은 편입한 후 단기간내**(예: 2년)**에 환매할 경우에는 환매수수료가 발생**할 수 있습니다. 환매수수료 부과여부 및 환매수수료율은 해당 펀드의 투자설명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
교 부 확 인

• 부산은행 ( )지점(직위 / 성명 :)으로부터 위 내용에 대하여
(핵심설명서를 제공받고 그 주요내용을 설명 들었음.)

년 월 일

성명 : 서명 또는 (인)

[준법감시인 심의필 2022-1556(심의일: 2022.12.12)(유효기간: 2023.01.01 ~ 2023.12.31)]

■ 상 품 명 : 개인형퇴직연금 (IRP)

■ 판매직원 필수 확인사항

- 개인형IRP 신규 신청하시는 고객님이 가입대상이 맞는지를 확인합니다.
- 가입대상 확인서류를 반드시 제출 받아 확인하고 신규 업무를 처리합니다.

■ 판매직원 : 직위 성명 서명 또는 (인)

■ 주요내용 확인

내 용	예	아니오
● 퇴직금 수령 용도로 개인형 IRP계좌를 개설후 즉시 해지 예정이십니까? (예 / 아니오 체크 바람)		아래답변

위의 항목을"아니오"로 답한 경우 아래 내용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

내 용	"확인함"체크
● 개인부담금 입금(퇴직급여제외)을 위한 IRP 개설시점 전후 1개월이내 당행에서 대출 취급이 제한 됩니다.	☐ 확인함
● 연금신청을 원하는 경우 별도로 연금수령개시신청을 하셔야 연금지급이 가능하며, 연금지급액은 매년 변동될 수 있습니다.	☐ 확인함
● 퇴직연금 본인자금 입금한도는 전 금융기관 통합 연간 1,800만원 입니다. ※세액공제 대상 납입한도(연금저축 납입한도) : 전 금융기관 합산 900만원(600만원)+ISA 만기 전환금액의 10%(연 300만원 한도) ※세액공제는 16.5%(지방소득세포함) 입니다.(총급여 5,500만원 이하)	☐ 확인함
● 세액공제를 받은 후 연금수령이 아닌 중도해지시 세액공제 받은 금액 및 운용소득은 기타소득세 16.5%(지방소득세포함) 적용됩니다.	☐ 확인함
● 연금수령 또는 일부인출시 순서	☐ 확인함

구분		일시금(부분) 수령시	연금 수령시	인출순서
퇴직급여		퇴직소득세	연금소득세 *주1)	②
개인 부담금	세액공제 받은 금액	기타소득세	연금소득세(연령별 과세)	③
	세액공제 받지않은 금액	과세제외	과세제외	①
운용소득		기타소득세	연금소득세(연령별 과세)	③

※ 주1) 퇴직급여를 연금수령시 퇴직소득세 30% 경감된 세액적용(단, 연금수령시점 10년 초과시 퇴직소득세 60% 적용)
* 개인부담금에 대한 연금 수령액이 매년 1,200만원이하인 경우 분리과세 적용, 연금 수령액이 1,200만원 초과인 경우 종합과세 또는 분리과세 대상임.
* 전액(부분) 인출시'세액공제 받은금액+운용소득'은 기타소득세 (16.5%, 지방소득세포함)가 분리과세 적용됩니다.

신청인(고객) (서명/인)